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536호 2020. 7. 14.(화요일)

조 례

- 하동군 조례 제2415호 하동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2
- 하동군 조례 제2416호 하동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6
- 하동군 조례 제2417호 하동군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 8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20-133호 하천 점용 허가 고시(산림녹지0)····· 21

입 법 예 고

- 하동군 공고 제2020-946호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2
- 하동군 공고 제2020-950호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8



공 고

- 하동군 공고 제2020-935호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공고(3차) 49
- 하동군 공고 제2020-936호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62

회 람									
--------	--	--	--	--	--	--	--	--	--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7월 14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 2415 호

하동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및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 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 가구 총 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
2. “재난지원금”이란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주택 또는 주 생계수단인 농·수·축·임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에게 재난복구 사업 및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지원기준지수”란 재난지원금을 계산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자연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4.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계산한 값과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 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5. “재난등급”이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지수를 기준으로 재난의 정도를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낙뢰·한파·폭염·가뭄·지진·황사 등의 기상특보(주의보·경보를 말한다)상황에서 발생한 재난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한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기상 예비특보 발령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
2.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않았으나 강우량, 풍속 등이 특보 발령 기준을 초과한 경우
3. 기상특보 발령이 없는 상황에서 벼락·우박 등의 현상으로 발생하는 피해
4. 그 밖에 중앙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으로 결정한 경우

제4조(지원 대상) 군수는 영 제5조에 따른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의 사유시설 피해와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기준) 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영 제9조제1항을 준용하여 아래기준과 같이 지원한다.

구 분	지 원 기 준					비 고
재난지수	299~250	249~200	199~150	149~100	99~50	
금액(천원)	300	250	200	150	100	

제6조(지원 제외)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6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재난지수 50미만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7조(신고절차 및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 ① 제5조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해당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면장은 신고내용을 기초로 지체없이 피해사실을 조사하고, 군 소관 시설별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재난지원금 지급) 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읍·면장으로부터 피해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확정하고 즉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재난지원금 반환) ① 군수는 재난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과 행정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 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돌려받을 경우 반환의무자가 지정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7월 14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 2416 호

하동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군수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1. ~ 5. (생략)</p> <p><u><신설></u></p> <p>6. (생략)</p>	<p>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 -----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p> <p>7. (현행 제6호와 같음)</p>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7월 14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 2417 호

하동군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하동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수행에서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의정 및 군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정책개발연구 활동”이란 하동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활동주체 : 의원연구회

나. 활동목적 : 의정 및 군정 발전에 필요한 정책개발

다. 활동방법 : 관련정보 및 자료의 수집·조사·분석에 관한 연구계획서(이하 “연구계획서”라 한다) 및 해당 결과보고서(이하 “연구보고서”라 한다)의 작성

라. 활동결과 :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제출

2. “의정(議政)”이란 의회 및 의원이 군정질문, 조례안·예산안 등 심사, 행정사무감사·조사 등 법정직무를 수행하는 활동 전반을 말한다.
3. “군정(郡政)”이란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령 및 조례·예산의 범위에서 결정·집행하는 자치사무에 관한 지방행정·정책을 말한다.
4. “의원연구회”란 의원 3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의 정책개발연구 활동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소속과 관계없이 구성하는 조직(이하 “연구회”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연구회는 “하동군의회 ○○○분야 정책개발 의원 연구회”란 명칭으로 사용한다.

제3조(활성화 및 대상) ① 의장은 연구회의 원활한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의회 정책개발비 예산(이하 “예산”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이하 “연구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활성화대상은 해당 예산규모를 감안하여 의정 및 군정 발전과 관련된 정책분야 3개 이내의 연구회로 한다.

③ 의장은 연구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외부 연구기관·단체, 관련분야 전문가 등(이하 “전문가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역대상 정책개발 과제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4조(연구회) ① 연구회는 이를 구성하고자 하는 의원 3명 이상이 그 중에서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호선(互選)하여 해당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연구회의 변동사항이 있거나 해체할 경

우에도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해체)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회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유사한 연구주제를 가지거나 친목성격의 경우에는 이를 구성할 수 없다.

③ 연구회는 해당 정책개발연구 활동을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전문가 등에게 용역을 의뢰할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연구회는 해당 연구의 전문적 수행을 위하여 전문가 등의 자문결과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의장은 의정운영공통경비의 범위에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연구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계획서를 변경할 때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비를 지급받은 때
3. 해당 기간 내에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
4. 소속 의원의 탈퇴 등으로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5. 그 밖에 의장이 예산의 사정 등으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때

제5조(연구계획서) ① 연구회는 제3조에 따라 연구비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마다 2월말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연구계획서에는 정책개발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목적 및 기간
2. 연구자
3. 의원의 전문성 확보와 의정 및 군정 발전에 예상되는 성과 또는 효과
4. 필요한 연구비. 이 경우 전문가 등의 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③ 연구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연구계획서의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계획 변경 신청서를 의장에게 다시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의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변경사항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연구비 등) ① 의장은 제출한 연구계획서의 용역 수행을 위하여 계약집행기준에 근거하여 계산한 원가계산서에 따라 의회사무과 계약부서(담당)에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② 의장은 연구용역 최종 산출물이 연구회에 제출되면, 용역수행기관에 해당 연구용역비를 지급한다.

③ 의장은 각 대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연구회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연구용역을 제외한 행정적 지원에 한정하여 의회사무직원 중에서 담당자 1명씩을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연구보고서) ① 연구회는 연구비를 지급받은 때에는 연구계획서에 따라 승인된 연구를 착수·수행하고, 해당 대표자가 해마다 11월 30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그 유인물에 해당 정책개발연구 결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약하여 붙여야 한다.

1. 연구목적의 달성도
2. 실제 연구기간
3. 연구 참여자(전문가 등을 활용한 때에는 그 기관·단체 등의 명칭 등을 포함한다)
4. 연구비의 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제8조 (심사위원회) ① 연구회의 효율적 정책개발연구 활동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장의 자문을 응한다.

1. 연구회의 등록 및 취소 또는 해지

2.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계획서의 작성 · 변경 승인

3. 연구비의 책정 ·조정, 사용내역 및 환수

4. 연구보고서의 목적달성도 및 보완내용

5.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용역과제의 심의

6. 그 밖에 의장 또는 의회운영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하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필요한 경우 대표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해당 회의록을 작성·보관해야 한다.

4. 회의에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5. 그 밖에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

한다.

⑤ 위원회는 연구계획서 · 연구보고서 등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항목별 최상·상·중·하·최하의 평균 심사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통보서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심사결과를 해당 연구회에 서면으로 알리고, 심사결과가 “하”이하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특례) ① 각 대표자는 지방총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1. 연구계획서: 1월 31일, 7월 31일
2. 연구보고서: 5월 31일, 11월 30일

② 지방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장은 각각 제1항제1호의 기한까지 제출되는 연구계획서에 대해서는 해당 예산총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승인의 수(數) 또는 연구비 중 감축해야 한다.

제10조(활용) ①의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가 “최상”인 연구보고서에 대해서는 해당 대표자에게 그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할 수 있으며, “상” 이상인 연구보고서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사례집으로 발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사례집을 발간한 때에는 회의 자료실에 비치·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군정의 참고·활용을 위하여 군수에게 보낼 수 있다.

제11조(환수) ① 의장은 연구회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연구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금액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용역을 의뢰한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같은 조 제5

항의 등록취소 또는 해지사유가 발생된 때

2.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연구비를 그 목적 외에 사용한 때

3. 제8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은 때

② 연구회는 의장이 정한 기간 내에 제1항의 환수조치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의장은 해당 연구회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연구회 소속 의원에게 앞으로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100분의 50씩을 공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조례의 시행 후 처음 등록하는 연구회의 연구계획서 제출기한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따로 정하여 그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의원연구회 등록 신청서(제4조 관련)

「하동군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안」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연구회 등록을 신청합니다.

- 1. 연구회명 :
- 2. 대 표 자 :
- 3. 설립목적 :
- 4. 구성인원 : 명

성 명	소속 상임위원회	서 명	비 고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하동군의회의회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의원연구회 등록 변경(해체) 신청서(제4조 관련)

「하동군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안」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본 연구회의 의원변경(해체)을(를) 신청합니다.

연구회명		
대 표 자		
변동의원	당 초	
	변 경	
변동일자		
변동사유		
기 타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하동군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연 구 계 획 서(제5조 관련)

「하동군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안」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본 연구회의 ○○○○년도 연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연구회명		
대 표 자		
연구내용	주 제	
	목 적	
연구방법 및 세부계획		“별첨” 가능
연 구 비	총 액	
	산출내역	
기 타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하동군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연구계획 변경 신청서(제5조 관련)

「하동군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안」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연구회명			
연구주체 변경내용	당 초	연구주체	
		연구목적	
	변 경	연구주체	
		연구목적	
연구계획 변경사유	“별첨” 가능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			
연 구 비	총 액		
	산출내역		
특기사항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하동군의회의회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연 구 보 고 서(제7조 관련)

「하동군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안」 제7조제1항에 따라 ○○○○년도 ○○○○연구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연구회명		
연구내용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결과	결과요약	
연구비	수령액	
	집행액	
	잔액	
	집행내역	“별첨” 가능
특기사항		

※ 위의 연구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사에서 승인절차에 필요한 서류로 의회 사무과의 협조를 받아 붙임

- 붙임서류 1. ○○○○년도 ○○○○연구보고서 1부.
 2. 연구비 세부사용내역서 1부.
 3. 기타 필요한 사항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하동군의회의회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연구계획서(보고서) 심사결과 통보서(제8조 관련)

년 월 일

「하동군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안」 제8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연구회의 ○○○○년도 연구계획서(보고서)를 심사·의결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연구회명		
대표자		
연구주제		
연구비 (연구계획서의 경우)	지급심사액	
	지급방법	
심사결과 (연구보고서의 경우)	(최상) (상) (중) (하) (최하)	
기 타		

년 월 일

하동군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심사위원회위원장 (인)

하동군의회 의장 귀하

■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6. 6. 30.>

하천점용 허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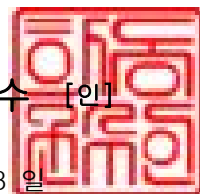
하동군 고시 제2020-133호

주 소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성명(법인명)	하동군수(산림복지과 산림보호담당)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614-83-00025		
하천명칭	횡천강	하천등급	지방하천
점용장소	하동군 횡천면 횡천리 1019-1번지 일원		
점용면적	451㎡		
최초허가일	2020-07-08		
점용기간	2020년 7월 14일부터 ~ 2020년 7월 19일까지(6일간)		
허가조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점용료는 매년1회 납입고지서에 의거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정당한 절차 없이 양도·양수, 승계, 전매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3. 정당한 절차 없이 점용목적 및 면적외 사용을 금지합니다. 4. 정당한 절차 없이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축제, 식수, 기타 유수에 저해되는 시설 및 자연경관 및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5. 유독물 또는 동물의 사체를 버리는 행위와 하천부속물을 손괴하거나 손괴 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일체 금지합니다. 6. 공익상 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점용장소를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으며 피허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7. 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점용하고자 할 때에는 점용기간 만료30일전까지 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8.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급성독성의 정도가 맹독성 또는 고독성인 농약과 어독성의 정도가 1급인 농약(농약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나. 중금속의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비료(비료관리법시행령 별표 1) 다. 퇴비의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비료 9. 하천,공유수면 및 하천부속물을 손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10. 콘크리트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단, 하천부속물등 하천의 유지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함.) 11. 하천으로의 통행을 어렵게 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12. 국가 및 공익상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점용면적을 가감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13. 소음, 공해 기타행위로 인하여 인근 주민(제3자 등)에게 입힌 피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합니다. 14. 현행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5. 점용을 중지하거나 하천점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16. 점용허가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점용물처리 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17. 원상회복면제의 신청 없이 방치되는 점용물에 대하여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18. 점용물의 임대 또는 관리위탁 하여서는 안됩니다. 19. 이용객에게 사용료를 부과하여서는 안됩니다. 20. 각 항의 위반행위를 할 때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천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합니다.

하 동 군 수 [인]

2020년 7 월 8 일



비고 :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무승계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하동군 공고 제 2020 - 946호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년 7 월 9 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2. 제 안 이 유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실질적 도움 제공으로 임신과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인구문제의 돌파구 마련을 위함
3. 주요 내용
 - 출산장려금 상향(안 제3조 제1항, 안 제4조 제2항)
 - 첫째아이 : 200만원(첫회 100만원 지급 후 1년간 분할지급)
 - 440만원(월10만원/만2세까지, 출생·돌 축하금 각 100만)
 - 둘째아이 : 300만원(첫회 100만원 지급 후 2년간 분할지급)
 - 1,100만원(월15만원/만5세까지, 출생·돌 축하금 각 100만)

- 셋째아이 : 1,000만원(첫회 100만원 지급 후 9년간 분할지급)
→ 1,700만원(월25만원/만5세까지, 출생·돌 축하금 각 100만)
- 넷째아이상 : 1,500만원 ~ 2,000만원(첫회 100만원 지급 후 9년간)
→ 3,000만원(월45만원/만5세까지, 출생·돌 축하금 각 150만)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 범위 확대

- 부모가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거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기간 3개월 경과한 달부터 출산장려금 지급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0년 7월 29일까지 하동군(참조: 행정과, 전화 055-880-2843, FAX 055-880-2159, e-mail :mars77@korea.kr)으로 【별지서식】 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붙임 1.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별표, 별지서식 포함)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제6호 및 제7호 지원대상중 가목을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부모 중 1명만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되고 군에 출생신고 및 입양 신고한 사람.(단,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로 한다.

별표 1 제1호 지원내용 중 “첫째아이 200만원”을 “첫째아이 440만원”으로, “둘째아이 300만원”을 “둘째아이 1,100만원”으로, “셋째아이 1,000만원”을 “셋째아이 1,700만원”으로, “넷째아이 1,500만원” “다섯째아이 이상 2,000만원”을 “넷째아이 이상 3,000만원”으로, “단, 첫째아이·둘째아이·셋째아이는 첫회 100만원 지급 후 각각 1년·2년·9년간 분할 지급하고, 넷째아이는 첫회 150만원 지급 후 9년간 분할하여 지급하며, 다섯째아이 이상은 첫회 200만원 지급 후 9년간 분할하여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아이의 생일이 속한 월에 지급하며, 개정사항은 공포일 이후 출생·입양아에 적용한다.”를 “단, 첫째아이는 월10만원씩 만2세까지 지급, 둘째아이는 월15만원씩 만5세까지 지급, 셋째아이는 월25만원씩 만5세까지 지급, 넷째아 이상은 월45만원씩 만5세까지 지급하며, 출생아 모두 출산축하금, 돌축하금을 지급하며(첫째~셋째 각 100만원, 넷째 이상은 각 150만원), 지급시기는 1회차, 13회차 출산장려금 지급시 로 지원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1. 1. 1. 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출산장려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제3조제1항, 제4조2항 관련)

세부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1. 출산장려금	<p>가.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부모 중 1명만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되고 군에 출생신고 및 입양 신고한 사람. (단,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이 된다)</p> <p>나. 분할지원에 대하여는 해당 아동과 부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로 지원 기간 내 전출 이력이 없어야 한다.</p>	<p>·첫째아이 440만원 ·둘째아이 1,100만원 ·셋째아이 1,700만원 ·넷째아이 이상 3,000만원 (단, 첫째아이는 월10만원씩 만2세까지 지급, 둘째아이는 월15만원씩 만5세까지 지급, 셋째아이는 월25만원씩 만5세까지 지급, 넷째아 이상은 월45만원씩 만5세까지 지급하며, 출생아 모두 출산돌축하금을 지급하며(첫째~셋째는 각 100만원, 넷째 이상은 각 150만원) 지급시기는 1회차, 13회차 출산장려금 지급시 로 한다.</p>
2. 출산축하용품	제1호의 지원대상과 동일함.	3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
3. 쌍둥이 이상 출산 축하금	제1호의 지원대상과 동일함.	1회에 한하여 쌍둥이 100만원. 세쌍둥이 이상 200만원.
4. 임신부 철분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군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 임신부로 등록한 임신 5개월부터 출산 전까지의 임신부.	6개월분 철분제.
5. 임신부 양수 검사비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군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 임신부 등록을 한 임신부 중에서 태아의 유전성질환, 태아의 염색체이상 의심 등으로 양수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소견)에 따라 양수검사를 실시한 임신부.	60만원 이내.
6. 다둥이 안전보험	<p>가. 둘째아이 이상의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와 2명 이상의 자녀 모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되고 군에 출생신고 및 입양 신고한 사람 (단,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p> <p>나. 부모와 2명 이상 자녀가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의 둘째아이 이상 자녀를 둔 사람.</p>	만 6세미만 취학 전까지 월 2만원 이내.
7. 영유아 양육수당	<p>가. 셋째아이 이상의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와 3명 이상의 자녀 모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되고 군에 출생신고 및 입양 신고한 사람 (단,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p> <p>나. 부모와 3명 이상 자녀가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의 셋째아이 이상 자녀를 둔 사람.</p>	만 6세미만 취학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달부터 월 10만원.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출산장려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제3조제1항, 제4조2항 관련)			[별표 1] 출산장려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제3조제1항, 제4조2항 관련)		
세부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세부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1. 산장려금	가.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부모 중 1명만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되고 군에 출생 신고 및 입양 신고한 사람. 나. 분할지원에 대하여는 해당 이동과 부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로 지원 기간 내 전출 이력이 없어야 한다.	·첫째아이 200만원 ·둘째아이 300만원 ·셋째아이 1,000만원 ·넷째아이 1,500만원 ·다섯째아이 이상 2,000만원 (단, 첫째아이·둘째아이·셋째아이는 첫 회 100만원 지급 후 각각 1년2년9년간 분할 지급하고 넷째아이는 첫 회 150만원 지급 후 9년간 분할하여 지급하고, 다섯째아이 이상은 첫 회 200만원 지급 후 9년간 분할하여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아이의 생일이 속한 월에 지급하며, 가정사형은 공포일 이후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적용한다.)	1. 산장려금	가.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부모 중 1명만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되고 군에 출생 신고 및 입양 신고한 사람. (단 3개월 미만인 경우는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나. 분할지원에 대하여는 해당 이동과 부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로 지원 기간 내 전출 이력이 없어야 한다.	·첫째아이 440만원 ·둘째아이 1,100만원 ·셋째아이 1,700만원 ·넷째아이 이상 3,000만원 (단, 첫째아이는 월10만원씩 만2세까지 지급, 둘째아이는 월15만원씩 만5세까지 지급, 셋째아이는 월25만원씩 만5세까지 지급, 넷째아 이상은 월45만원씩 만5세까지 지급하며, 출생아 모두 출산돌축하금을 지급하며(첫째~셋째는 각 100만원, 넷째 이상은 각 150만원), 지급시기는 1회차, 13회차 출산장려금 지급 시로 한다.
	(생략)			(현행과 같음)	
6. 다둥이 안전보험	가. 둘째아이 이상의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와 2명 이상의 자녀 모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되고 군에 출생신고 및 입양 신고한 사람 나. 부모와 2명 이상 자녀가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의 둘째아이 이상 자녀를 둔 사람.	만 6세미만 취학 전까지 월 2만원 이내.	6. 다둥이 안전보험	가. 둘째아이 이상의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와 2명 이상의 자녀 모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되고 군에 출생신고 및 입양 신고한 사람 (단 3개월 미만인 경우는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나. 부모와 2명 이상 자녀가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의 둘째아이 이상 자녀를 둔 사람.	만 6세미만 취학 전까지 월 2만원 이내.
	7. 영유아 양육수당	가. 셋째아이 이상의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와 3명 이상의 자녀 모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되고 군에 출생 신고 및 입양 신고한 사람 나. 부모와 3명 이상 자녀가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의 셋째아이 이상 자녀를 둔 사람.		만 6세미만 취학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달부터 월 10만원.	7. 영유아 양육수당

하동군 공고 제2020-950호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0일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체육시설 사용료 및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안을 반영하고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공정한 사용기준 마련(안 제3~4조)
- 나.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강화 기준 마련(안 제7조)
- 다. 체육시설 감면에 대한 상위 관계법령 준수(안 제13조)
- 라. 주민의 반환 청구권을 제한하는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안 제14조)
- 마. 읍면체육시설의 읍면장 사무위임 및 생활체육공원, 야구장, 체육관 사용료 징수 근거 마련(안 제21조)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0년 7월 30일까지 하동군수 (참조: 문화체육과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방법 : 별지 서식으로 따라 전화·우편·FAX 등 제출

다. 제출기관 : 하동군수

- 주소 :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우편번호 52333)

하동군청 문화체육과

- 전화 : 055-880-2822~3 / FAX 055-880-2069

별 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의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라 함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하동군 (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 사용자"라 함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료"라 함은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라 함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자"라 함은 제3조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7.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 20명 이상이 인솔자를 따라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 8. "기본액"이라 함은 기본사용료 및 이용료를 말한다.
- 9.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 10. "학생"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
생을 말한다.
- 11. "일반인"이라 함은 19세 이상의 자를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의 자는 경
로대상으로 한다.
- 12. "체육동호인 단체(조직)"란 체육활동을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
을 말한다.

제2조의2(군수의 책무)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하동군민(이하 "군
민"이라 한다)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하여 체육시설이 효율적으로 관
리 및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맞게 관리인을 배치하여 군민이 체육시
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3조(사용신청) ① 체육시설(경기장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나 전용으로 사
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신청서를 사용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다만, 사용 목적이 긴급한 경우에는 사용하기로 한 날의 전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을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개인은 체육시설을 이용(연습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군수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이용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군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체
육시설의 사용신청 및 승인·변경·취소 등의 처리는 정보처리장치(인터넷 등)
또는 방문, 접수 등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사용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결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군이 주관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2. 군 체육회 및 가맹단체가 주관하는 각종훈련, 체육경기 및 행사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럿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7.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시설의 개방)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 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주민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설별 사용 기간·시간 및 이용수칙
2. 상설 스포츠 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군수는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군수는 개방계획 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6조(개방제한) 군수는 경기대회의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있어 체육시설 개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간과 사유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
3. 사용료 등을 내지 않은 경우
4.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경우
6. 사용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규칙을 위반한 경우
7. 제4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체육경기 등이 있는 경우
8. 그 밖에 군수가 사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제한을 받은 자를 사용제한된 날부터 30일간 사용금지하고 사용제한의 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체육시설의 입장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취사·음주 행위를 하는 사람
4.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9조(사용기간 등) ① 체육시설의 일일사용 기간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여름철	겨울철
조 기	05:00~08:00	06:00~09:00
주 간	08:00~19:00	09:00~18:00
야 간	19:00~23:00	18:00~23:0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전용사용료 및 연습사용료의 각 기본시간 미만 사용은 기본시간 사용으로 각각 본다.

제10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전용사용, 연습사용, 부속시설 사용, 광고물의 게시·게양 사용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③ 사용료의 납부방법은 제2항의 사용 구분에 따라 정한다.

④ 2명 이상 사용이 경합되어 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예산회계법」의 절차에 따른다.

⑤ 군수는 체육시설의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사용료 징수는 매출액 수입에 따르되 일반경기와 그 밖의 사용(프로경기, 행사 등)의 사용료 징수요율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초청장,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 다만, 관람 수입금액의 총액이 사용 전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사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초과 사용료 등)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한 때에는 별표 1의 기본 사용료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초과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주·야간 연속 사용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사용시간 외 1시간당 초과 사용료는 해당 체육시설 기본 사용료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단, 인조잔디축구장은 초과 시간당 기본 사용료로 징수한다.
2.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는 1시간으로 본다.

② 야간사용 시 전용사용료(주간)의 30퍼센트를 더한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국가 또는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군 체육회 및 가맹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5일 이상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군을 대표하여 도민체전 규모 이상의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팀을 포함한다)가 연습목적으로 사용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사
2. 청소년, 학생, 어린이 등 18세 이하의 사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행사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0.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1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1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1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14. 「하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15. 출산 또는 입양으로 「주민등록법」상 만 18세 미만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16. 군 체육회에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가 체육시설물을 15인 이상 사용하는 경우(다만, 천연잔디구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17. 그 밖에 공익 또는 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행사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3

조에 따른 사용신청 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면제·감면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료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단,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다른 일자에 체육시설 사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지 않고, 한 차례에 한하여 납부한 사용료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과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 사용이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

2. 체육시설 유지관리 등 자체사정으로 사용이 정지 되었을 경우

3. 사용일 5일 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② 사용개시일 이후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될 경우, 사용료 전액과 사용료의 10퍼센트를 위약금으로 반환한다.

③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한다.

1.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때는 사용료의 90퍼센트

2.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때는 사용료의 50퍼센트

3.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사용제한 및 취소한 경우에는 제한일 및 취소일까지 사용료는 공제하고, 나머지 일수의 사용료는 사용료의 10퍼센트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후 반환한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사용료 반환이 지연되었을 경우 그 지연기간에 따라 반환 사용료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자연이자를 사용자에게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⑥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사용료반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관람권)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람권이 없이 입장할 수 있다.

1. 경기 및 행사의 주최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신문, 통신, 방송사의 출입기자

2. 군수가 발행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입증 휴대자

3.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자로서 경로우대중 이나 주민등록증을 휴대한 자
 제16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할 설비를 설치할 때
 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현수막·벽보 등)을 설치하
 여서는 아니 된다. 단,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
 다.

②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17조(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
 칙 안내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
 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8조(체육시설 관리운영 위원회)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 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9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 이용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모든 관람권, 초대권(초대장),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 군수의 검인을 받
 아야 한다.

제20조(위탁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개인 또
 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사무위임)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군의 사무 중 읍·면 생활체육
 공원 내 체육시설 등의 사용승인, 사용취소,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읍·면장에게 권한을 위임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부터 별표 2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육시설 사용 신청한 자는 제3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하동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제4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0	읍·면 생활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등의 사용신청, 사용취소,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21조	
----	---	-------------------------	--

하동군 체육시설 사용료(제10조 관련)

1. 체육시설 사용료

가. 전용사용료

(단위 : 원)

시 설 별	사용구분	기본시간	평일	휴일(토요일포함)	비고
공설운동장 (육상경기)	체육경기	3시간	11,000	15,000	
	체육이외	3시간	18,000	22,000	
공설운동장 (천연잔디축구장)	체육경기	3시간	100,000	150,000	
	체육이외	3시간	150,000	200,000	
실내체육관	체육경기	3시간	15,000	20,000	
	체육이외	3시간	25,000	30,000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다목적체육관	체육경기	4시간	20,000	30,000	
	체육이외	4시간	30,000	40,000	
인조잔디축구장	체육경기	1시간	25,000	30,000	읍면생활체육 공원 포함
인조잔디야구장	체육경기	1시간	30,000	40,000	
실내야구연습장	체육경기	1시간	10,000	15,000	

나. 연습사용료

(단위 : 원/ 1명당)

시 설 별	사용구분	기본시간	평일	휴일(토요일포함)	비고
공설운동장 (육상경기)	개 인	3시간	200	300	
	단 체	3시간	150	200	
실내체육관· 실내야구연습장	개 인	3시간	300	400	
	단 체	3시간	200	250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다목적체육관	개 인	3시간	300	400	
	단 체	3시간	200	250	

2. 부속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종 별		기 준	요 금	비 고
엠프시설	공설운동장	1회	5,000	
	실내체육관	1회	10,000	
	농어촌복합체육시설	1회	10,000	
천연잔디구장 전기		1회	5,000	조기 및 야간
천연잔디구장 조명		3시간	50,000	
인조잔디축구장 조명		1시간	12,000	기준시간(1시간) 초과 시 1시간 단위 4,000원 추가
인조잔디야구장 조명		1시간	12,000	기준시간(1시간) 초과 시 1시간 단위 4,000원 추가
실내체육관 전기 및 조명		시간당	10,000	
난 방 료		시간당	20,000	
냉 방 료		시간당	15,000	

3. 광고물의 게시·계양에 대한 사용료

(단위 : 원)

종 류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선전 또는 광고물의 게시	게시면적	-	◦ 1제곱미터 미만은 1제곱미터로 한다.
	1제곱미터당 (월액)	-	◦ 15일 미만은 2분의 1월로 한다. ◦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한다.
	1등급	5,000	◦ 1등급 : 본부석 정면 주위로 한다.
	2등급	4,000	◦ 2등급 : 본부석을 중심으로 좌우위치로 한다.
애드벌룬 및 유사물 계양 행위	1일 1개	2,000	

[별표 2]

* 관람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요율

1.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의 경우 관람료 수입의 20퍼센트의 해당액을 사용료로 한다 (단, 관람료 수입총액이 전용료 기본액에 미달할 때에는 기본액을 사용료로 한다.)
2. 사용료가 20만원을 초과할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퍼센트 사용료를 할인한다.

[별지 제1호서식]

하동군 체육시설 사용 신청서(제3조 관련)				
신청인	주 소			
	성 명		생 년 월 일	(남/여)
사 용 구 분	시 설 명			
	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			
	경기(행사)개요		설비개요	
	중 계 방 송		조 명	
	녹 화		확 성 기	
	사 용 내 용			
관 람 (이용) 료	특별관람 (이용)	매 원		
	일반관람 (이용)	매 원		
	초 대 권	매 원		
	군 경, 학 생	매 원		
	예 매 처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하 동 군 수 귀 하				

[별지 제2호서식]

하동군 체육시설 사용증(제3조 관련)				
1. 신청인				
주소 :				
성명 :				
2. 장소 :				
3. 사용목적 :				
4. 사용일시 :				
	년	월	일	시부터
				(일간)
	년	월	일	시까지
5. 사용 시설명 :				
6. 사용료 :				원
7. 사용인원 :				명
8. 사용조건 :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하	동	군	수

[별지 제3호서식]

No.

출 입 증(제15조 관련)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하동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 사람에게
하동군체육시설 무료관람을 승인합니다.

유효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년 월 일

하 동 군 수

[별지 제4호서식]

관 랑 권

<p>No.</p> <p>관 랑 권</p> <p>구 분(개인, 단체)</p> <p>관람료 : 원</p> <p>발매일 : 년 월 일</p>	<p>No.</p> <p>관 랑 권</p> <p>관 랑 료 : 원</p> <p>관람일시 : 년 월 일 시</p> <p>발 매 일 : 년 월 일 시</p> <p> 하 동 군 수 (인)</p>
--	---

개 인 : 하늘색바탕

단체 및 할인권 : 적색바탕

[별지 제5호서식]

이 용 권 (제3조 관련)

<p>No</p> <p style="text-align: center;">이 용 권</p> <p>이용구분(개인, 단체)</p> <p>이용시간 :</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 시</p> <p>분</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 시</p> <p>분</p>	<p>No</p> <p style="text-align: center;">개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이용권</p> <p style="text-align: center;">단 체</p> <p>이용시간 : 년 월 일 시 분</p> <p>발 행 일 : 년 월 일 시 분</p> <p style="text-align: center;">하 동 군 수 (인)</p>
---	---

개인 : 하늘색바탕

단체 : 적색바탕

[별지 제6호서식]

사용료 면제·감면 신청서(제13조 관련)

신청인	성 명 (단체명)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남() 여()
	주 소		전화번호			
사용종목						
사용일시						
사용목적						
면제·감면 사유		※ 증명서류 첨부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면제·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사용료 반환신청서(제14조 관련)						
접수번호				접수일자		
사 용 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전화번호			
		주 소				
사 용 내 용	사 용 종 목					
	사 용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납부금액					
사 용 료 반환사유						
반환처	성 명					
	반환은행 (계좌번호)					
					수수료 없음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다음과 같이 사용료 반환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징수액	반 환 결정사항	반 환 결정액	결 재	담당자	담 당	과 장

하동군 공고 제2020-935호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공고(3차)

운행 가능한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 하오니 희망하시는 차량소유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7. 7.
하 동 군 수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 신청기간 : 2020. 7. 16.(목) ~ 7. 24.(금)
- 사업물량 : 127백만원, 약 75대분(예산 범위 내)
 - ※ 차종 및 연식을 고려하여 차등지원 됨에 따라 지원 대수 변동가능
- 신청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위임장 첨부 시 대리신청 가능)
 1. 접수시간 : 토·일을 제외한 근무시간(09~18시)내 접수
 2. 접 수 처 : 하동군청 환경보호과(별관 1층)
 - 주소 : 우)52333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청 환경보호과
 - ※등기우편의 경우 신청기간 내 도착분에 한하며 구비서류 누락 시 접수 불가하니, 서류를 잘 갖춰서 제출하기 바람에 제출한 서류는 반송하지 않습니다.(일반우편, FAX 등 불가)
 - ※신청자는 서류 정상 도달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우리 군에서 책임지지 않음
- 대상자 선정 기준 : **선착순 아님**(신청 접수 완료 후 아래 우선 순으로 대상자 선정)
 1. LPG화물차 신차구입 신청차량
 2. 차량 **정기검사 유효기간** 잔여 일수가 **짧은** 차량

3. 잔여 일수가 동일할 경우 연식이 오래된 차량

□ **조기폐차 지원 기준 및 선정 기준**

○ **조기폐차 신청 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1.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배출가스 5등급 확인방법

- 인터넷에서 배출가스 등급조회(<http://emissiongrade.mecar.or.kr/>)
- 콜센터(1833-7435) 안내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2. 신청일 현재 **하동군에 1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차량등록원부상 등재된 차량 소유주 주소 하동 등록
 -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도로용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 4.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5.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6.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7.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없는 자**
- ※ 차량소유자당 지원 대수 1대로 제한(지입차량의 경우 실소유주 증빙자료 제출로 지원 가능)

○ **지원 금액 및 산정 기준**

- 1.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으로 지원하되 아래의 보조금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만원) (기본+추가 지원)	지원율	
		기본	추가 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300	70%	30% (경유차 아닌 신차 구매 시)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100%	200% (신차 구매 시)
	3,500cc 초과 5,500cc 이하		
	5,500cc 초과 7,500cc 이하		
	7,500cc 초과		
	7,500cc 초과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2.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 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 적용
3.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4. 다만,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건설기계(도로용 3종)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가능하고, 내용연수가 경과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 적용
5.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
 -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추가지원
 - . 경유차를 제외한 차량 신규 등록시 기준가액의 30% 추가 지원
 - * 조기폐차 후 LPG화물차 신규 등록시 추가지원 제외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 . 휘발유·가스 대체차량이 없는 대형 차량은 Euro6 이상 차량('20.1.1일 이후 출고차량)을 신규 등록시(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10% 범위 이내의 규격 증가 인정) 기준가액의 200% 추가지원
6. 2002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2002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7.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의 경우 지원율 10%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8.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천원 이하 절사)
9.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말소등록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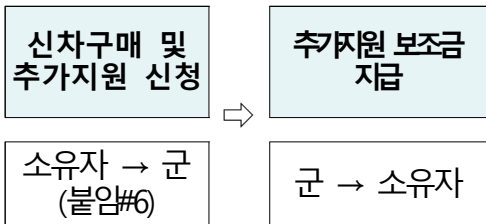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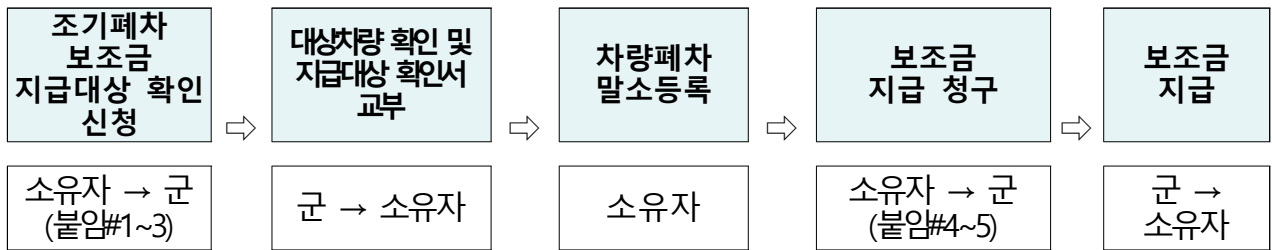
-수출말소 및 차량초과말소 제외

10. 생계형 차량지원 대상은 보조금 신청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신청 전 1개월 이내 발급)를 첨부

사안별 생계형차량 적용기준

-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수급자인 경우만 인정
- 운수회사(법인)명으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 원부에 개인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소유주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 인정
- * 지입차량 소유주가 생계형 차량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식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가 교부된 후 폐차 말소

○ 조기폐차 신청시 구비서류

- ① [붙임1]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 ②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 ③ 자동차등록원부(갑) 1부
- ④ 소유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⑤ 자동차검사결과 증빙서류(택1)

- [붙임4]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실시)

-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실시한 관능검사 또는 정기검사 결과서

※ 자동차검사업체 직인 필

- ⑥ [붙임3]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⑦ 차량 사진 4매(전·후·좌·우)

《대리 신청하는 경우》

- 공통서류 + 위임장과 차주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

《공동 소유인 경우》

- 공통서류 + 소유자 중 1명을 신청인으로 하고 또 다른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서명사실확인서), 신분증 사본 제출

《법인 소유인 경우》

- 공통서류 +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및 신청자 신분증 사본 제출

【유의사항】

조기폐차제도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해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한 정부지원 사업이므로 반드시 정상운행 판정 차량이어야 함(사고 등으로 인해 폐차상태의 차량이거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자동차로 확정 전에 미리 폐차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신청시 구비서류 (선정 후 보조금 청구시)

- ① [붙임4]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 ② 자동차말소증빙서류
- ③ 소유자 통장 사본
- ④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하동군 발행분)
- ⑤ [붙임6]청렴이행서약서

【유의사항】보조금 신청은 폐차 완료 후 상기서류 구비하여 확정통보 후 1개월 이내까지 환경보호과 방문 접수(기간 이후 폐차 및 보조금 신청시,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수출말소나 차령초과말소의 경우 보조금 지급 제외

○ 신차 구매 및 추가지원 보조금 지급 청구

- ① [붙임4]차량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 ② 신차의 자동차등록증
- ③ 소유자 통장 사본
- ④ [붙임6]청렴이행서약서

※ 신차 구매로 인한 추가보조금은 자동차 제작사에 직접 지급 가능

【유의사항】추가보조금 신청은 조기폐차 대상확인서 발급 후 4개월 이내까지 환경보호과 방문 접수(기간 이후 추가보조금 신청시,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지원대상자 취소 ◀

- 조기폐차 지원 : 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신차구입 :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후 정당한 사유없이 **4개월 이내** 보조금 추
가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기타

- 접수기간 중 차량별 보조금 금액 답변 불가함
-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전액 환수함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
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및 「 ‘20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문의

- 전화 : 하동군 환경보호과 조기폐차 담당자(☎055-880-2564)

[붙임1] 신청서

접수번호 2020-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소유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전화번호		⑤FAX	
대 상 자동차	⑥자동차번호		⑦차대번호	
	⑧자동차제원	<input type="checkbox"/> 연식()년 <input type="checkbox"/> 배기량()CC		
		정원(승합)	명	
		중량(화물)	<input type="checkbox"/> 적재중량()톤	<input type="checkbox"/> 총중량()톤
	⑨차명 및 형식	/	⑩용 도	
	⑪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년 월)		
	⑫주행거리		⑬사용 연료	
운행 상태	⑭검사 일자		⑮검사 기관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정보(성명, 사용본거지)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구 비 서 류	1.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2. 자동차등록원부(갑) 3. 소유자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저소득층 해당 여부			
		여		부	

신차구입 여부(경유차 제외) (O , X)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2]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위 임 자 (위임을 하는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상기 위임자_____는(은) 수입자_____에게
 차량번호_____호 자동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 서류작성 및 신청, 보조금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 붙임 1. 위임자(법인포함)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2. 수입자 신분증 사본 1부.

년 월 일

위 임 자 : (인)
 인감(법인)도장

[붙임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 ◆ (수집·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 절차안내 및 사후관리업무 대행기관(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기환경보전법」 제 54조의 배출가스정보관리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및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검사기관(교통안전공단)
- ◆ (수집·이용목적)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LPG)엔진 개조·교체, 조기폐차 등 보조금의 지급 증빙 및 사후관리
-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생년월일
-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 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차량소유자 또는 차량운행자(성명)

(서명, 날인)

○ 하동군수 귀중

[붙임4]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신 청 자동차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자동차제원	<input type="checkbox"/> 연식()년 <input type="checkbox"/> 배기량()CC		
		정원(승합) : 명		
	중량(화물) : <input type="checkbox"/> 적재중량()톤 <input type="checkbox"/> 총중량()톤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년 월)		
	주행거리		사용연료	
	보조금신청금액	원 (₩)		
폐차	말소 일자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폐차 후 신차구매		(O , X)		
<p>위와 같이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해당내역을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신청자 : (서명 또는 인)</p> <p>하동군수 귀하</p>				
<p>※ 첨부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동차 말소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4. 청렴이행서약서 				

[붙임4]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확인번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신 청 자동차	차량번호		차대번호	
	차 종	<input type="checkbox"/> 연식()년 <input type="checkbox"/> 배기량()CC		
		정원(승합) : 명		
		중량(화물) : <input type="checkbox"/> 적재중량()톤 <input type="checkbox"/> 총중량()kg		
확 인 항 목	동일성 확인	- 등록번호표(차대) 및 주요제원 일치 여부		<input type="checkbox"/> 일 치 <input type="checkbox"/> 불일치
	원동기	- 시동상태 및 원동기 설치상태 - 윤활유 등 누유 및 유량 - 냉각시스템의 손상 및 누출 여부		<input type="checkbox"/> 양 호 <input type="checkbox"/> 불 량
	동력전달장치 (변속기포함)	- 변속기의 작동 및 누유 여부 - 추진축 및 연결부의 손상 변형 - 기어 물림(빠짐) 및 단속 상태		<input type="checkbox"/> 양 호 <input type="checkbox"/> 불 량
	조 향	- 설치 상태 및 누유 여부 - 좌·우 작동상태		<input type="checkbox"/> 양 호 <input type="checkbox"/> 불 량
	제 동	- 설치상태 및 누유 여부 - 시동 후 페달상태		<input type="checkbox"/> 양 호 <input type="checkbox"/> 불 량
	전 기	- 축전지 및 전기배선 설치상태		<input type="checkbox"/> 양 호 <input type="checkbox"/> 불 량
	그외 주요 부품	- 완충장치, 등화장치, 계기장치, 연료 누출, 유리창, 타이어, 자체 외관, 주요 골격 부위 등 파손 및 절손(변형)		<input type="checkbox"/> 양 호 <input type="checkbox"/> 불 량 (해당 부품명:)
	첨부물	사진 4매(전·후·좌·우면)		
판 정 결 과	정상 가동 여부	<input type="checkbox"/> 가	<input type="checkbox"/> 부	
	불가 사유			
위와 같이 조기폐차 대상(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인)				

[붙임6]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서식<신설>

확인번호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신규 구매 차량 정보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자동차제원	<input type="checkbox"/> 연식()년 <input type="checkbox"/> 배기량()CC <input type="checkbox"/> 용도: ()		
		<input type="checkbox"/> 차명 : <input type="checkbox"/> 정원(승합) : 명		
		<input type="checkbox"/> 적재중량()톤 <input type="checkbox"/> 총중량()톤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년 월)		
	제작일자	년 월 일	사용연료	
추가 보조금신청금액	원 (₩)			
<p>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위와 같이 신차구매 내역을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 :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하동군수 귀하</p>				
<p>※ 첨부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도로용3종) 등록증(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4. 청렴이행서약서 				

[붙임기]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하동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하동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하동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0. . .

성 명

(서명)

하동군 공고 제2020-936호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2020년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전문인력(기간제근로자)을 「하동군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9일
하 동 군 수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자격요건	인원	근무기간	주요업무
하동군보건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간호사	1명	2020. 8. 1. ~ 2020. 12. 31.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혈압·혈당 측정 및 만성질환자 상담)
	치과위생사	1명	2020. 8. 1. ~ 2020. 12. 31.	구강보건사업 (불소도포, 구강보건 교육)

※계약기간은 1년 연장 가능

2. 응시자격

○ 공통사항

- 1) 「하동군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12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응시결격 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2) 관련학과 전공자 중 해당 면허증(간호사·치과위생사 면허증 소지자)

- 3) 남자일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4) 운전면허 2종 이상 소지자로 운전 가능자
- 5) 거주지 · 성별 : 제한 없음
- 6) 기타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우대사항(증빙자료 제출 시 인정)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하동군으로 되어 있는 자

3. 전형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4. 근무조건

근무장소	업무분야	근무시간	인건비	비고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31 하동군보건소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주 5일 (월~금) 09:00~18:00	2020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함	

5. 채용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공고기간	2020.7.9(목)~24(금)	• 하동군청 홈페이지 게재
접수기간	2020.7.9.(화)~24(금)	• 하동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 직접 방문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장소 장소 공고	2020.7.27(월)	• 개별 통보
면접시험	2020.7.28(화)	
최종합격 예정자 결격사유 조회	2020.7.29(수)	• 자격증, 경력사항, 결격사유 조회
최종 합격자 발표	2020.7.30(목)	• 개별 통보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방법

- 응시원서는 별도로 교부하지 않으며, 하동군청 홈페이지에 게재한 응시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양식 임의변경 금지)

나. 응시원서 접수

- 1) 접수기간 : 2020.7.9(목)~24(금)
- 2) 접 수 처 : 하동군보건소 2층 건강증진담당(☎055-880-6644)
- 3)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 및 접수서류를 접수처에 직접 방문 접수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본 공고문 첨부양식 사용)

- 원서 소정란에 5,000원 상당의 하동군수입인지 및 사진 부착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천연색 사진(3×4cm반명함)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나. 이력서 1부(본 공고문 첨부양식 사용, 사진부착)

- 학력, 경력(해당자에 한함)을 최근 순으로 기재

다. 자기소개서 1부(본 공고문 첨부양식 사용, 사진부착, A4용지 1매 이내)

라. 면허증(간호사·치위생사) 사본 1부

마.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사. 주민등록초본 1부(시험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남자일 경우 병역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병적증명서 별도 제출

아. 신원진술서 2부

자. 자격요건확인을 위한 동의서 1부

차. 건강진단서 1부(최종합격자에 한해 채용일 전까지)

8.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응시원서 상의 착오,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 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임용결격사유에 의한 불합격으로 판명될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라. 면접시험에서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보다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음
- 마. 공고된 본 시험 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공고할 예정임
- 바. 기타 시험에 관한 사항은 하동군보건소 건강증진부서(☎880-66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면]

응 시 원 서

본인은 2020년도 하동군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기간제근로자) 채용 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0년 월 일 성명 (인)

응시번호	※	응시분야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사 진 반명함판 (3.5×4.5cm)	
이 름		연 락 처													
주 소															
주민등록번호									~						
최종학력	년 월 일/			학교/			년/			졸업 · 수료 · 재학					
면허 및 자격	면허증		<input type="checkbox"/> 간호사면허증 <input type="checkbox"/> 치과위생사면허증 (면허번호 :)												
	기타 자격증(전산등)														
경 력	근 무 기 관				근 무 기 간				담 당 업 무 (세부적으로기록)						

하동군수 귀하

응 시 표

응시번호	※	응시분야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사 진 반명함판 (3.5×4.5cm)		
이 름		소지자격증														
주민등록번호									~							
2020년 월 일			하동군수 귀하													

하동군수 귀하

[뒷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로 작성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작 성 요 령>

가. 주 소 : 주소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합니다.

나. 학 력 : 최종학력을 기재합니다.

다. 경 력 : 해당경력을 기재하되 근무기관명을 명기하여야 합니다.

라. 이 름 : 정자로 기재합니다.

마.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증에 의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바. 사 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5×4.5cm) 탈모 상반신 사진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이어야 합니다.

사. 기 타 : 응시번호(※표)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4.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응시표를 지참하지 아니한 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원서첨부 사진과 동일원판의 것) 1매를 지참하여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양식)

사 진	이 력 서				
	성	한 글		생 년 월 일	
	명	한 자		영 문	
	주 소				
학 력	기 간	학 교 명 (고교 이상)		전공(학위)	
경 력	기 간	근 무 처 (부 서)	직 위 (급)	업 무 내 용	
자 격 사 항	취 득 년 월 일	자 격 · 면 허 증		시 행 처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0년 월 일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width: 80%; margin: 0 auto;"> 성 명 : (서명) </div>					

(양식)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생년월일(연령)	응시직렬	응시분야
		공무직	상수도관리원

상수도 관리원 임용예정분야에 대한 이해

(상수도관리원 임용예정분야에 대해 아는 대로 간략히 쓰시오)

응시취지 및 향후계획

(임용예정기관에 응시하게 된 배경과 향후 활동계획을 적으시오)

기타 자기소개

(자신의 이력, 장점 등 특기사항을 형식에 구애 없이 기술하시오
- 별지 이용가능)

2020. . .

작성자

(인/서명)

○ 작성요령 : 자유롭게 간단히 기술하되, 분량은 반드시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양식)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성 명 : (한자)
- 생년월일 :
- 주 소 :

본인은 하동군에서 시행하는 2020년 보건소(건강증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하동군이 실시하는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제출서류(거주지 확인, 경력증명서, 자격증 및 기타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검증(통신이용, 증명서 발급 등)을 위한 확인서 및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0년 월 일

작 성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귀하의 소중한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과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해 보호되며 하동군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채용에 따른 목적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약식)

- 본인은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범죄 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 이하 동일)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규정 등에 따라 신원조사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기관장은 원활한 신원조사를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해당 신원조사기관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 목적·관리방법, 정보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된 개인정보자료·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신원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관리·폐기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원조사를 진행할 수 없어 업무수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 본인 동의

성 명	생년월일	서 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	민감정보 제공 동의

※ 신원조사를 위해 수집되는 정보자료 항목

개인정보	민감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조회자료(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경력·수사·수배 조회자료(경찰청)

하동군수 귀하